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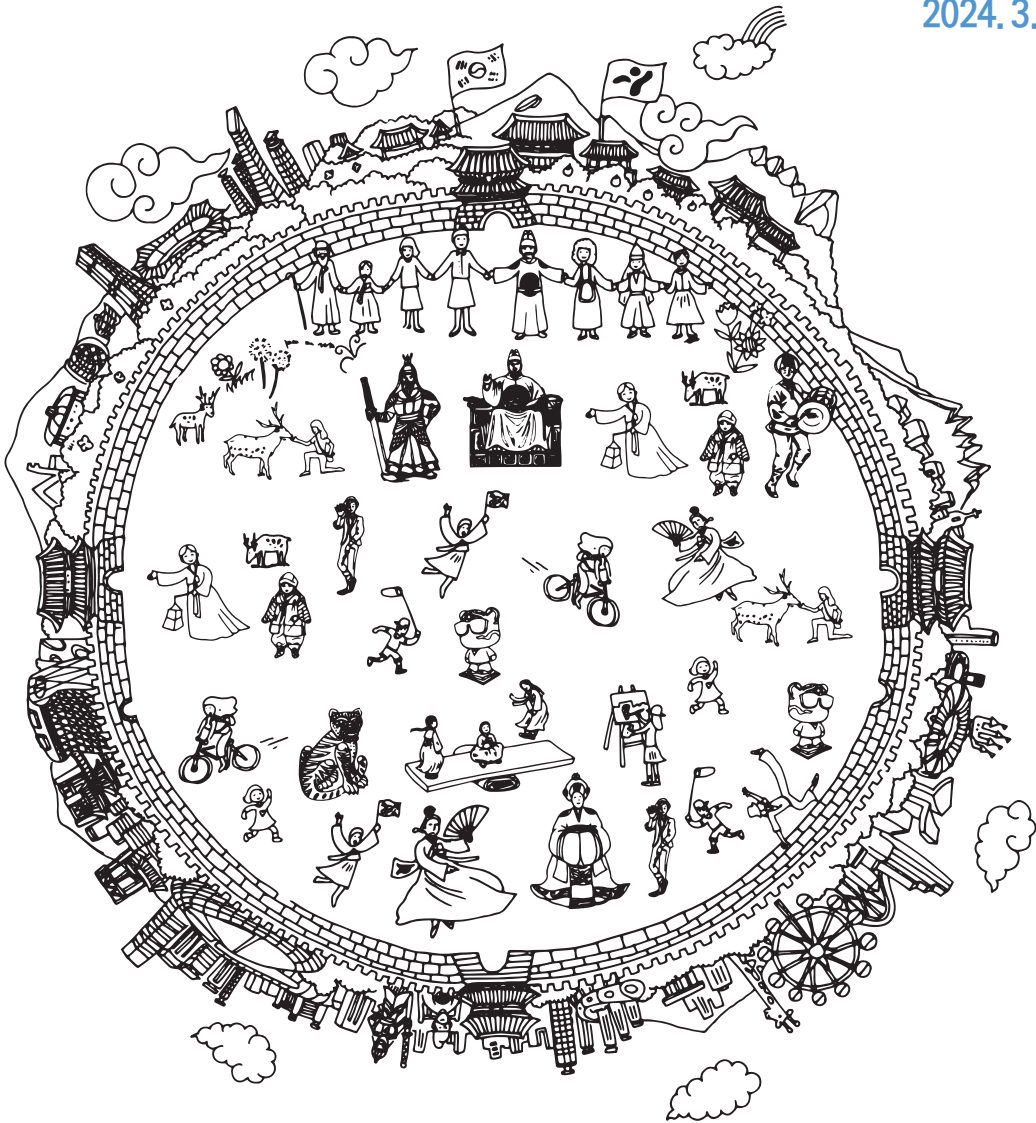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965호
2024. 3. 29.(금)



목 차**◆ 자치법규 등****[조 례]**

제9167호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

[입법예고]

제2024-1028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

제2024-1029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4

◆ 고 시

제2024-170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32

자치법규 등

[조 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9167호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자는 음주측정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운전자의 운행업무 전 음주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장애인콜택시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장의 음주측정 장비가 매우 부족하고 운전자의 음주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교통약자의 이동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자의 음주측정 전산시스템 구축과 운행업무 전 운전자 음주측정을 의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특별교통수단 운영자의 음주측정 전산시스템 구축과 운행업무 전 운전자 음주측정 의무화를 규정함(제14조제3항)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028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민선8기 후반기 시정 추진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정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 개편 및 소관사무 이관·확대 등 기능 조정

- 기획조정실로 ‘약자와의 동행’에 관한 사무 이관(←약자와의동행추진단)
 - ▶ 공공자산에 관한 사무는 기획조정실→도시공간본부 및 미래공간기획관(규칙기구)으로 이관
- 경제정책실 내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기능강화
 - ▶ 국제교류에 관한 사무는 경제정책실→글로벌도시정책관(규칙기구)으로 이관
- 복지정책실 내 ‘돌봄복지 및 사회적 고립 해소’ 사무 신설 및 ‘1인가구(←여성가족정책실)’ 관련 사무 이관
- 도시교통실 내 ‘교통단속 업무’를 ‘주차계획’ 업무와 통합 추진
- 문화본부 내 ‘국가유산 유지보수·전수·계승’ 업무와 ‘국가유산 복원·가치 제고’ 업무 역할 재정립 및 조문정비
- 시민건강국 내 산재되어 있는 난임, 어르신 건강관리, 중독예방, 대사증후군 등 ‘건강관리’ 기능 강화
-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을 ‘민생노동국’으로 재편하여 소상공인 지원, 노동정책,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소비자 보호, 농산물 유통 업무 추진
- 디지털정책관을 ‘디지털도시국’으로 재편하여 디지털행정, 데이터기반 행정, 정보시스템 및 정보공개, 정보보안, 정보 인프라 구축, 공간정보 업무 추진
- 민생사법경찰단을 ‘민생사법경찰국’으로 재편하여 경제분야 및 안전분야 수사 추진
- 재난안전관리실 내 ‘보행환경개선’ 관련 기능 강화
 - ▶ 건설혁신 관련 사무는 재난안전관리실→건설기술정책관(규칙기구)으로 이관
- 주택정책실 내 분산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관련 기능 강화
 - ▶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 사무는 주택정책실→건설기술정책관(규칙기구)으로 이관
- 감사위원회 내 ‘청렴 역량 증대 및 반부패 기능’ 강화
 - ▶ 인권 관련 사무는 감사위원회→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이관

- 나. 주요 실국(1급 기구)의 핵심사업 추진력 강화를 위한 통솔범위 조정 및 기존 기구 명시화
- 도시교통실, 복지정책실, 주택정책실, 재난안전관리실에 각각 ‘교통운영관(3급)’, ‘돌봄·교육정책관(3급)’, ‘주택정책관(3급)’, ‘도로기획관(3급)’ 신설
 - 경제정책실의 ‘경제일자리기획관’, ‘창조산업기획관’, 도시교통실의 ‘교통기획관’, 주택정책실의 ‘건축기획관(←주택공급기획관)’ 기구 조례 명시화

다. 자율신설기구 일반기구화

- 자율신설기구 관련 조항인 기구정원규정 제9조의2(기구설치특례)가 폐지됨에 따라 ‘복지기획관’, ‘디자인정책관’, ‘경제일자리기획관’ 정비

※ 기구규칙 사항 : 디자인정책관

라. 한시기구 정비 및 존속기한 연장

- ‘주택공급기획관(3급)’을 폐지하고, 건축기획관(3급)으로 재편
- ‘균형발전기획관(3급)’을 일반기구화하고, (3.4급)으로 직급 변경
- ‘자원회수시설추진단(∼ 24.8.18.)’과 ‘한강사업추진단(∼ 24.7.16.)’의 존속기한을 각각 3년 연장(‘ 24.8.19.∼’ 27.8.18. / ‘ 24.7.17.∼’ 27.7.16.)

마. 시민이 알기 쉽고, 간결한 명칭으로 기구 명칭 변경

- 경제정책실 (→ 경제실), 복지정책실 (→ 복지실), 도시교통실 (→ 교통실),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민생노동국), 재난안전관리실 (→ 재난안전실), 주택정책실 (→ 주택실), 푸른도시여가국 (→ 정원도시국)

※ 기구 규칙 사항 : 여성가족정책실 (→ 여성가족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참조 :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이메일 : syg1108@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조의2” 를 “제9조” 로 한다.

제3조의2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도시교통실” 을 “경제실, 복지실, 교통실” 로, “시민건강국” 을 “시민건강국, 민생노동국, 디지털도시국” 으로, “재난안전관리실, 주택정책실” 을 “민생사법경찰국, 재난안전실, 주택실” 로, “푸른도시여가국” 을 “정원도시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경제실 밑에 경제일자리기획관, 창조산업기획관을, 복지실 밑에 복지기획관, 돌봄·고독정책관을, 교통실 밑에 교통기획관, 교통운영관을, 재난안전실 밑에 도로기획관을 두고, 주택실 밑에 주택정책관, 건축기획관을 둔다.

제5조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약자와의 동행 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

제6조의 제목 “(경제정책실)” 을 “(경제실)”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정책실장” 을 “경제실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7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호,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9호, 제5호 및 제8호로 한다.

4. 대학 활성화 정책 및 캠퍼스타운 구성에 관한 사항

제7조의 제목 “(복지정책실)” 을 “(복지실)”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정책실장” 을 “복지실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8호, 제6호,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호(중전의 제3호) 중 “복지취약계층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지역사회” 를 “지역사회” 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중전의 제5호) 중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을 “장애인”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장애인 거주시설·활동지원·인권·권익에 관한 사항

7. 사회적 고독·고립 문제 대응,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항
9. 1인가구 문제 대책 수립 및 1인가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제8조의 제목 “(도시교통실)”을 “(교통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교통실장”을 “교통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운영·관리”를 “운영·관리, 주차차위 반 등 교통단속업무 총괄”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3호 중 “문화재 보존정책”을 “국가유산 보존정책”으로, “문화재 활용”을 “국가유산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문화재 복원 및 관리”를 “국가유산 활용 및 복원”으로 한다.

제12조의2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중전의 제4호) 중 “관리”를 “관리, 공중위생의 관리”로 한다.

2. 서울형 헬스케어에 관한 사항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민생노동국) 민생노동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상공인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노동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골목시장 활성화 지원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소비자보호·물가안정·사회적경제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산물 유통 및 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12조의4(디지털도시국) 디지털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계획 수립, 디지털 행정에 관한 사항
2. 빅데이터·통계의 수집·분석·활용 등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사항
3. 행정정보시스템 및 행정정보 공개제도에 관한 사항
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정책 및 통신인프라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공간정보정책 및 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사항

제14조의2의 제목 “(디자인정책관)”을 “(민생사법경찰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디자인정책관”을 “민생사법경찰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디자인진흥정책 수립·시행”을 “특별사법경찰 지명직무 단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2.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유관기관 협력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의 제목 “(재난안전관리실)”을 “(재난안전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안전관리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로(차도) 관리, 도로 등 설해 대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보도관리 및 보도환경 개선, 도로 부속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의 제목 “(주택정책실)”을 “(주택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정책실장”을 “주택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를 제6호로 하고,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중전의 제5호) 중 “임대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한다.

2. 임대주택 정책수립 시행, 매입·공급·관리에 관한 사항

제19조의 제목 “(푸른도시여가국)”을 “(정원도시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푸른도시여가국장”을 “정원도시국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27조제10호를 삭제한다.

제130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조례 제8448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를 삭제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8448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중 “주택공급기획관, 균형발전기획관, 자원회수시설추진단”을 “자원회수시설추진단”으로 하고, “2024년 8월 18일”을 “2027년 8월 18일”로 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8766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중 “제21조제4항”을 “제21조”로 하고, “2024년 7월 16일”을 “2027년 7월 16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나목 중 “민생사법경찰단”을 “민생사법경찰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3호나목 중 “경제정책실”을 “경제실”로 한다.

제33조제1항제3호다목 중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을 “민생노동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4호나목 중 “푸른도시여가국”을 “정원도시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6호가목 중 “복지정책실”을 “복지실”로 한다.

제33조제1항제7호가목 중 “재난안전관리실”을 “재난안전실”로 한다.

제33조제1항제8호가목 중 “주택정책실”을 “주택실”로 한다.

제33조제1항제8호다목 중 “디지털정책관”을 “디지털도시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0호가목 중 “도시교통실”을 “교통실”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가목 중 “복지정책실장”을 “복지실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재난안전관리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재난안전관리실장 및 복지정책실장”을 “재난안전실장 및 복지실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주택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을 “주택실장, 복지실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복지정책실장”을 “복지실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복지정책실장”을 “복지실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복지정책실장,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을 “복지실장, 민생노동국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복지정책실장”을 “복지실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가목 중 “복지정책실장”을 “복지실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주택정책실장”을 “주택실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정책실장”을 “경제실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나목 중 “경제정책실장” 을 “경제실장” 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경제정책실장” 을 “경제실장” 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경제정책실장” 을 “경제실장” 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을 “민생노동국장” 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을 “민생노동국장” 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을 “민생노동국장” 으로 한다.

⑯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을 “민생노동국장” 으로 한다.

⑰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을 “민생노동국장” 으로 한다.

⑱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디지털정책관” 을 “디지털도시국장” 으로 한다.

⑲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디지털정책관” 을 “디지털도시국장” 으로 한다.

⑳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디지털정책관” 을 각각 “디지털도시국장” 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디지털정책관” 을 “디지털도시국장” 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디지털정책관” 을 “디지털도시국장” 으로 한다.

㉑ 서울특별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디지털정책관” 을 “디지털도시국장” 으로 한다.

㉒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주택정책실” 을 “주택실” 로 한다.

㉓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2제3항 중 “주택정책실장” 을 “주택실장” 으로 한다.

㉔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주택정책실장” 을 “주택실장” 으로 한다.

㉕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안전관리실장, 도시교통실장, 기후환경본부장과 푸른도시여가국장” 을 “재난안전실장, 교통실장, 기후환경본부장과 정원도시국장” 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재난안전관리실장” 을 “재난안전실장”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교통실장” 을 “교통실장” 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푸른도시여가국장” 을 “정원도시국장” 으로 한다.
별표 1의 관리자란 중 “재난안전관리실장” 을 “재난안전실장” 으로 하고, “도시교통실장” 을 “교통실장” 으로 하며, 같은 별표의 비고 나목 중 “재난안전관리실장” 을 “재난안전실장” 으로 한다.

㉖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푸른도시여가국장”을 “정원도시국장”으로 한다.

㉗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재난안전관리실장” 을 “재난안전실장” 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재난안전관리실장” 을 “재난안전실장” 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4호 중 “재난안전관리실장” 을 “재난안전실장” 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재난안전관리실” 을 “재난안전실” 로 한다.

㉘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안전관리실장” 을 “재난안전실장”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교통실장” 을 “교통실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재난안전관리실” 을 “재난안전실” 로 한다.

㉙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재난안전관리실장” 을 “재난안전실장” 으로 한다.

㉚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재난안전관리실장” 을 “재난안전실장” 으로 한다.

- ㉓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안전총괄실장” 을 “재난안전실장” 으로 한다.
- ㉔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8호 중 “재난안전관리실장” 을 “재난안전실장” 으로 한다.
- ㉕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재난안전관리실장” 을 “재난안전실장” 으로 한다.
- ㉖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관리청란 중 “안전총괄실장” 을 “재난안전실장” 으로 한다.
- ㉗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도시교통실장” 을 “교통실장” 으로 한다.
- ㉘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도시교통실장” 을 “교통실장” 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도시교통실” 을 “교통실” 로 한다.
- ㉙ 서울특별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도시교통실” 을 “교통실” 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교통실장” 을 “교통실장”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도시교통실” 을 “교통실” 로 한다.
- ㉚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시교통실장” 을 “교통실장” 으로 한다.
- ㉛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중 “도로교통사업소장” 을 각각 “도로사업소장” 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도로 관리사업소장” 을 “도로사업소장” 으로 한다.
- 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경제정책실” 을 “경제실” 로 하고, “복지정책실” 을 “복지실” 로 하며, “도시교통실” 을 “교통실” 로 하고,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을 “민생노동국” 으로 하며, “재난안전관리실” 을 “재난안전실” 로 하고, “주택정책실” 을 “주택실” 로 하며, “푸른도시여가국” 을 “정원도시국” 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도시교통실장” 을 “교통실장” 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시교통실장” 을 “교통실장” 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및 제129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부터 제9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제9조 ----- ----- ----- -----.
제3조의2(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실·본부·국(이하 “자율신설기구”라 한다)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이 조에서는 “성과평가”라 한다)는 성과지표 달성도, 행정수요 지속성, 기능수행 효율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여 실시한다.	
③ 성과평가를 위해 각 자율신설 기구는 평가 관련 자료를 조직담	

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존속기간의 연장·삭제 또는 자율신설기구의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성과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실·본부·국의 설치)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도시교통실, 기후환경본부,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평생교육국, 시민건강국, 행정국, 재무국, 재난안전관리실, 주택정책실, 도시공간본부, 균형발전본부, 푸른도시여가국, 물순환안전국을 둔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따라 경제정책실장 밑에 경제일자리기획관을, 복지정책실장 밑에 복지기획관을, 디자인정책관을 둔다.

제5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제4조(실·본부·국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경제실, 복지실, 교통실-----

-- 시민건강국, 민생노동국, 디지털도시국-----
민생사법경찰국, 재난안전실, 주택실----- 정원도시국-----.

③ 경제실 밑에 경제일자리기획관, 창조산업기획관을, 복지실 밑에 복지기획관, 돌봄·고독정책관을, 교통실 밑에 교통기획관, 교통운영관을, 재난안전실 밑에 도로기획관을 두고, 주택실 밑에 주택정책관, 건축기획관을 둔다.

제5조(기획조정실) -----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 (생 략)

<신 설>

3. ~ 7. (생 략)

8. 공공자산 운용에 관한 사항

9. (생 략)

10. (생 략)

제6조(경제정책실) 경제정책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 략)

<신 설>

4. (생 략)

5. (생 략)

6. 국제교류 · 협력, 국제기구 · 회
의에 관한 사항

7. 캠퍼스타운 조성 ·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생 략)

9. (생 략)

10. (생 략)

제7조(복지정책실) 복지정책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 (생 략)

<신 설>

-----.

1. · 2. (현행과 같음)

3. 약자와의 동행 관련 사무에 관
한 사항

4. ~ 8. (현행 제3호부터 제7호가
지와 같음)

<삭 제>

10. (현행 제9호와 같음)

9. (현행 제10호와 같음)

제6조(경제실) 경제실장-----
-----.

1. ~ 3. (현행과 같음)

4. 대학 활성화 정책 및 캠퍼스타
운 조성에 관한 사항

7. (현행 제4호와 같음)

6. (현행 제5호와 같음)

<삭 제>

<삭 제>

9. (현행 제8호와 같음)

5. (현행 제9호와 같음)

8. (현행 제10호와 같음)

제7조(복지실) 복지실장-----
-----.

1. · 2. (현행과 같음)

3.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장애인

3. 복지취약계층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에 관한 사항

4. (생략)

<신설>

5.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재활시설·편의시설 및 장애인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6. (생략)

<신설>

제8조(도시교통실) 도시교통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6. 주차계획의 수립·조정, 주차장 건설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7. ~ 9. (생략)

10. 주정차위반 등 교통단속업무 총괄

제10조(문화본부) 문화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 (생략)

거주시설·활동지원·인권·권익에 관한 사항

8. 지역사회 -----
-

6. (현행 제4호와 같음)

7. 사회적 고독·고립 문제 대응,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

5. (현행 제6호와 같음)

9. 1인가구 문제 대책 수립 및 1인가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제8조(교통실) 교통실장-----
-----.

1. ~ 5. (현행과 같음)

6. -----
----- 운영·관리, 주정차위반 등 교통단속업무 총괄-----

7. ~ 9. (현행과 같음)

<삭제>

제10조(문화본부) -----
-----.

1. · 2. (현행과 같음)

3. 문화재 보존정책 수립 및 문화재 활용에 관한 사항
 4. 문화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 6. (생략)
 제12조의2(시민건강국) 시민건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신설>
 2. · 3. (생략)
 4.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생략)
 6. 공중위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생략)
<신설>

3. 국가유산 보존정책 --- 국가유산 관리-----
 4. 국가유산 활용 및 복원-----
 5. · 6.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시민건강국) -----
 -----.
 1. (현행과 같음)
 2. 서울형 헬스케어에 관한 사항
 3. · 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5. ----- 관리, 공중위생의 관리-----
 6. (현행 제5호와 같음)
<삭제>
 7. (현행과 같음)
 제12조의3(민생노동국) 민생노동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상공인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노동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골목시장 활성화 지원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소비자보호 · 물가안정 · 사회적경제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

<신 설>

제14조의2(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자인진흥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경관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도시빛정책에 관한 사항

제15조(재난안전관리실) 재난안전

항

5. 농산물 유통 및 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12조의4(디지털도시국) 디지털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계획 수립, 디지털 행정에 관한 사항
2. 빅데이터·통계의 수집·분석·활용 등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사항
3. 행정정보시스템 및 행정정보 공개제도에 관한 사항
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정책 및 통신인프라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공간정보정책 및 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사항

제14조의2(민생사법경찰국) 민생사법경찰국장-----.

1. 특별사법경찰 지명직무 단속-----
2.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유관 기관 협력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제15조(재난안전실) 재난안전실장-----

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5. 건설업 관리 및 하도급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6. (생략)

7. 도로 및 부속시설물 관리, 도로 등 설해 대책, 지하안전관리, 보도관리 및 보도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9. (생략)

제16조(주택정책실) 주택정책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신설>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공공택지개발, 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6. ~ 8. (생략)

9.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삭제>

6. 도로(차도) 관리, 도로 등 설해 대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현행 제6호와 같음)

7. 보도관리 및 보도환경 개선, 도로 부속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8.·9. (현행과 같음)

제16조(주택실) 주택실장-----

1. (현행과 같음)

2. 임대주택 정책수립 시행, 매입·공급·관리에 관한 사항

3. (현행 제2호와 같음)

8. (현행 제3호와 같음)

7. (현행 제4호와 같음)

4. ----- 공공주택 -----

9. ~ 11. (현행 제6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5. (현행 제9호와 같음)

10. 소규모 건축물 등 지역 내 건

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생 략)

제19조(푸른도시여가국) 푸른도시
여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 9. (생 략)

제21조(한시기구) ① 주택공급정책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무를 시
행하기 위하여 주택정책실에 한
시적으로 주택공급기획관을 두
며, 주택공급기획관은 다음 사항
을 분장한다.

1.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2. 민간 정비사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② 도시 균형발전에 관한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균형발전본부에
한시적으로 균형발전기획관을 두
며, 균형발전기획관은 다음 사항
을 분장한다.

1. 도시 균형발전 계획 및 도시재
생정책의 수립·조정·시행에
관한 사항

2. 도시개발 및 시장정비사업 등
에 관한 사항

<삭 제>

6. (현행 제11호와 같음)

제19조(정원도시국) 정원도시국장-
-----.

1. ~ 9. (현행과 같음)

제21조(한시기구) <삭 제>

<삭 제>

3. 동남권, 동북권, 서부권 등 권

역별 개발 등에 관한 사항

③·④ (생략)

제127조(소관사무) 감사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 9. (생략)

10.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제130조(소관사무) 시민감사옴부즈
만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
다.

1. ~ 8. (생략)

<신설>

부 칙 <제8448호, 2022.8.8.>

제2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제4조제3항의 경제일자리기획

관, 복지기획관, 디자인정책관

의 존속기한은 2024년 8월 18

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8448호, 2022.8.8.>

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21

조의 주택공급기획관, 균형발

전기획관,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의 존속기한은 2024년 8월 18

일까지로 한다.

①·②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127조(소관사무) -----
-----.

1. ~ 9. (현행과 같음)

<삭제>

제130조(소관사무) -----

-.

1. ~ 8. (현행과 같음)

9.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정책 수

립·시행에 관한 사항

부 칙 <제8448호, 2022.8.8.>

<삭제>

부 칙 <제8448호, 2022.8.8.>

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

----- 자원회수시설추진단-

----- 2027년 8월 18일

-----.

부 칙 <제8766호, 2023.7.17.>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21
조제4항의 한강사업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4년 7월 16일까
지로 한다.

부 칙 <제8766호, 2023.7.17.>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21
조의 -----
----- 2027년 7월 16일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 · 제안 또는 제출 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 · 위원회 · 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 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소관 사무 조정 및 명칭 변경 사항으로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으며, 본 기구 조정으로 인한 정원 변동 관련 비용 추계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별도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함

4. 작성자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심연수 ☎ 2133-6729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029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민선8기 후반기 시정 추진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총정원 변동없이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율신설기구·한시기구 정비 및 사업 추진력 강화를 위한 직급조정

- 3급 +7명, 3·4급 △2명, 4급 +10명, 4·5급 △6명
 - ▶ (본 청) 3급 +7명, 3·4급 △3명, 4급 +10명, 4·5급 △7명
 - ▶ (사업소) 4급 +1명
 - ▶ (합의제) 3·4급 +1명, 4급 △1명, 4·5급 +1명

나.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한 정원 조정

- 5급이하 정원 및 전문경력관의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하여 장기결원 감원 및 직군 조정(5급이하△12, 전문경력관+3)
 - ▶ 서울대공원 동식물관리요원(임기제) 퇴직 대비 인력충원을 위한 전문경력관 다군 조정 사항 포함 (5급이하 △4 → 전문경력관 +4)
 - ▶ 물재생센터 위험물취급요원(전문경력관) 장기결원 정원 조정 사항 포함 (전문경력관 △1→ 5급이하+1)

다. 조직·업무 이관에 따른 기관 간 정원이체

- 본청 △1 → 합의제 +1
 - ▶ 합의제 감사위원회 ‘청렴담당관’ 신설에 따른 인력보강(1명)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이메일 : syg1108@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10,521명” 을 “10,520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226명” 을 “227명” 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계	본 청	의 회 사 무 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총 계	11,730					
정무직 계	4					
시 장	1	1				
부시장	1	1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1					1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1					1
일반직 계	10,700					
1급	7	6	1			
2·3급	26	21		1	3	1
3급	25	15		1	9	
3·4급	3	2				1
4급	269	164	19	8	71	7
4·5급	2	1				1
5급 이하 소계	10,208					
전문경력관 소계	160					
별정직 계	37					
4급상당	5	3	2			
5급상당 이하 소계	32					
연구직 계	410					

구 분	계	본 청	의 회 사 무 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연구관	73	8		41	24	
연구사	337					
지도직 계	25					
지도관	3			3		
지도사	22					
교육공무원 계	554					
총 장	1			1		
교수 등	476			476		
조 교	77					

※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0월 12일까지 일반직 4급 계는 270으로 하고 4급 본청은 165로 하며, 5급 이하 소계는 10,207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에 두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의 총수는 19,167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 -----.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부터 제6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u>10,521명</u>	1. ----- -----: <u>10,520명</u>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u>226명</u>	5. -----: <u>227명</u>																																																																																																																																																																																																																		
6. (생략)	6. (현행과 같음)																																																																																																																																																																																																																		
[별표 4]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별표 4] ----- ----- -----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계</th><th>본청</th><th>외청 사무처</th><th>각급 기관</th><th>사업소</th><th>합계 행정기관</th></tr> </thead> <tbody> <tr> <td>총계</td><td>11,730</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 colspan="7">(생략)</td></tr> <tr> <td>일반직 계</td><td>10,700</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 colspan="7">(생략)</td></tr> <tr> <td>3급</td><td>18</td><td>8</td><td></td><td>1</td><td>9</td><td></td></tr> <tr> <td>3·4급</td><td>5</td><td>5</td><td></td><td></td><td></td><td><산설></td></tr> <tr> <td>4급</td><td>259</td><td>154</td><td>19</td><td>8</td><td>78</td><td>8</td></tr> <tr> <td>4·5급</td><td>8</td><td>8</td><td></td><td></td><td></td><td><산설></td></tr> <tr> <td>5급 이하 소계</td><td>10,220</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전문경력관 소계</td><td>157</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 colspan="7">(생략)</td></tr> <tr> <td colspan="7">(생략)</td></tr> <tr> <td colspan="7">(생략)</td></tr> <tr> <td colspan="7">(생략)</td></tr> </tbody> </table>	구분	계	본청	외청 사무처	각급 기관	사업소	합계 행정기관	총계	11,730						(생략)							일반직 계	10,700						(생략)							3급	18	8		1	9		3·4급	5	5				<산설>	4급	259	154	19	8	78	8	4·5급	8	8				<산설>	5급 이하 소계	10,220						전문경력관 소계	157						(생략)							(생략)							(생략)							(생략)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계</th><th>본청</th><th>외청 사무처</th><th>각급 기관</th><th>사업소</th><th>합계 행정기관</th></tr> </thead> <tbody> <tr> <td>총계</td><td>11,730</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 colspan="7">(현행과 같음)</td></tr> <tr> <td>일반직 계</td><td>10,700</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 colspan="7">(생략)</td></tr> <tr> <td>3급</td><td>25</td><td>15</td><td></td><td>1</td><td>9</td><td></td></tr> <tr> <td>3·4급</td><td>3</td><td>2</td><td></td><td></td><td></td><td>1</td></tr> <tr> <td>4급</td><td>259</td><td>164</td><td>19</td><td>8</td><td>71</td><td>7</td></tr> <tr> <td>4·5급</td><td>2</td><td>1</td><td></td><td></td><td></td><td>1</td></tr> <tr> <td>5급 이하 소계</td><td>10,208</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전문경력관 소계</td><td>160</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 colspan="7">(현행과 같음)</td></tr> <tr> <td colspan="7">(현행과 같음)</td></tr> <tr> <td colspan="7">(현행과 같음)</td></tr> <tr> <td colspan="7">(현행과 같음)</td></tr> </tbody> </table>	구분	계	본청	외청 사무처	각급 기관	사업소	합계 행정기관	총계	11,730						(현행과 같음)							일반직 계	10,700						(생략)							3급	25	15		1	9		3·4급	3	2				1	4급	259	164	19	8	71	7	4·5급	2	1				1	5급 이하 소계	10,208						전문경력관 소계	16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구분	계	본청	외청 사무처	각급 기관	사업소	합계 행정기관																																																																																																																																																																																																													
총계	11,730																																																																																																																																																																																																																		
(생략)																																																																																																																																																																																																																			
일반직 계	10,700																																																																																																																																																																																																																		
(생략)																																																																																																																																																																																																																			
3급	18	8		1	9																																																																																																																																																																																																														
3·4급	5	5				<산설>																																																																																																																																																																																																													
4급	259	154	19	8	78	8																																																																																																																																																																																																													
4·5급	8	8				<산설>																																																																																																																																																																																																													
5급 이하 소계	10,220																																																																																																																																																																																																																		
전문경력관 소계	157																																																																																																																																																																																																																		
(생략)																																																																																																																																																																																																																			
(생략)																																																																																																																																																																																																																			
(생략)																																																																																																																																																																																																																			
(생략)																																																																																																																																																																																																																			
구분	계	본청	외청 사무처	각급 기관	사업소	합계 행정기관																																																																																																																																																																																																													
총계	11,730																																																																																																																																																																																																																		
(현행과 같음)																																																																																																																																																																																																																			
일반직 계	10,700																																																																																																																																																																																																																		
(생략)																																																																																																																																																																																																																			
3급	25	15		1	9																																																																																																																																																																																																														
3·4급	3	2				1																																																																																																																																																																																																													
4급	259	164	19	8	71	7																																																																																																																																																																																																													
4·5급	2	1				1																																																																																																																																																																																																													
5급 이하 소계	10,208																																																																																																																																																																																																																		
전문경력관 소계	16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0월 12일까지 일반직 4급 계는 270으로 하고 4급 본청은 165로 하며, 5급 이하 소계는 10,207로 한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공무원 총정원 19,167명을 유지하되, 직급 조정 및 직군 조정 관련 인건비 및 기구운영비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4년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향후 5년간의 소요인건비 및 기구운영비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지출	○ 인력운영경비	170,725	349,986	358,735	367,704	376,896	1,624,046
	○ 기구운영경비	54,550	109,100	109,100	109,100	109,100	490,950
	소계(a)	225,275	459,086	467,835	476,804	485,996	2,114,996
수입	○						
	○						
	소계(b)						
□ 총 비용(a-b)		225,275	459,086	467,835	476,804	485,996	2,114,996

※ 인력운영비는 매년 인건비 상승률 2.5%(' 24년 기준) 적용 추계

※ 1차년도는 정원 배정시기를 고려하여, 6개월을 기준으로 함 [정원배정 : 2024.7월(예정)]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국비							
시비	지방세수입	225,275	459,086	467,835	476,804	485,996	2,114,996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225,275	459,086	467,835	476,804	485,996	2,114,996

5. 덧붙이는 의견

6. 작성자 :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심연수(☎ 2133-6729)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정원 변동내역 : 총정원 변동없음

○ 일반직 : (-)

- 3급 +7, 3.4급 △2, 4급 +10, 4.5급 △6, 6급 △8, 9급 △4

- 전문경력관 나군 △1, 전문경력관 다군 +4

2. 비용소요 추계 : +450,550천원

○ 비용추계 상세내역은 1차년도 12개월을 기준으로 추계한 것임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비용	세 부 내 역
합 계	+450,550	◆ 총 계 : +450,550 [인력운영비 1차년도 12월 기준 계] : 341,450 ▷ 3급(+7) : $118,172 \times 7\text{명} = 827,205$ ▷ 3.4급(△2) : $118,172 \times \triangle 2\text{명} = -236,344$ ▷ 4급(+10) : $100,252 \times 10\text{명} = 1,002,521$ ▷ 4.5급(△6) : $100,252 \times \triangle 6\text{명} = -601,512$ ▷ 6급(△8) : $75,817 \times \triangle 8\text{명} = -606,535$ ▷ 9급(△4) : $44,200 \times \triangle 4\text{명} = -176,799$ ▷ 전문경력관 나군(△1) : $71,598 \times \triangle 1\text{명} = -71,598$ ▷ 전문경력관 다군(+4) : $51,128 \times 4\text{명} = 204,513$ ※ 인력운영비 : 기본급, 수당, 연금부담금, 건강보험금 등 포함 [기구운영비 1차년도 12월 기준 계] : 109,100 ▷ 3급(+7) : $14,700 \times 7\text{명} = 102,900$ ▷ 3.4급(△2) : $12,500 \times \triangle 2\text{명} = -25,000$ ▷ 4급(+10) : $4,200 \times 10\text{명} = 42,000$ ▷ 4.5급(△6) : $1,800 \times \triangle 6\text{명} = -10,800$ ※ 기구운영비 : 업무추진비, 직책급 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70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24. 3. 28.)에서 선정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시장

1. 대상지별 권리산정기준일

연번	자치구	명칭(가칭)	위 치	면적(㎡)	권리산정기준일 (자치구 추천일)
1	동대문	장안2동	장안동134-15일대	67,759	2024.02.15.
2	성북	정릉동 898-16	정릉동 898-16일대	53,971	2024.02.26.
3	강북	미아동 345-1	미아동 345-1일대	44,061	2024.01.12.
4	도봉	쌍문2	쌍문동81일대	64,316	2024.03.04.
5	양천	신월5동72	신월5동72일대	29,665	2024.02.21.
6	관악	신림5-1	신림동419일대	43,247	2023.12.04.

※ 면적은 참고용으로, 향후 측량등으로 달라질 수 있음

2. 지정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건축물의 신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3.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 후보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자동 실효

4. 관계도면 : 붙임 참조

5. 안내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02-2133-7236) 또는 아래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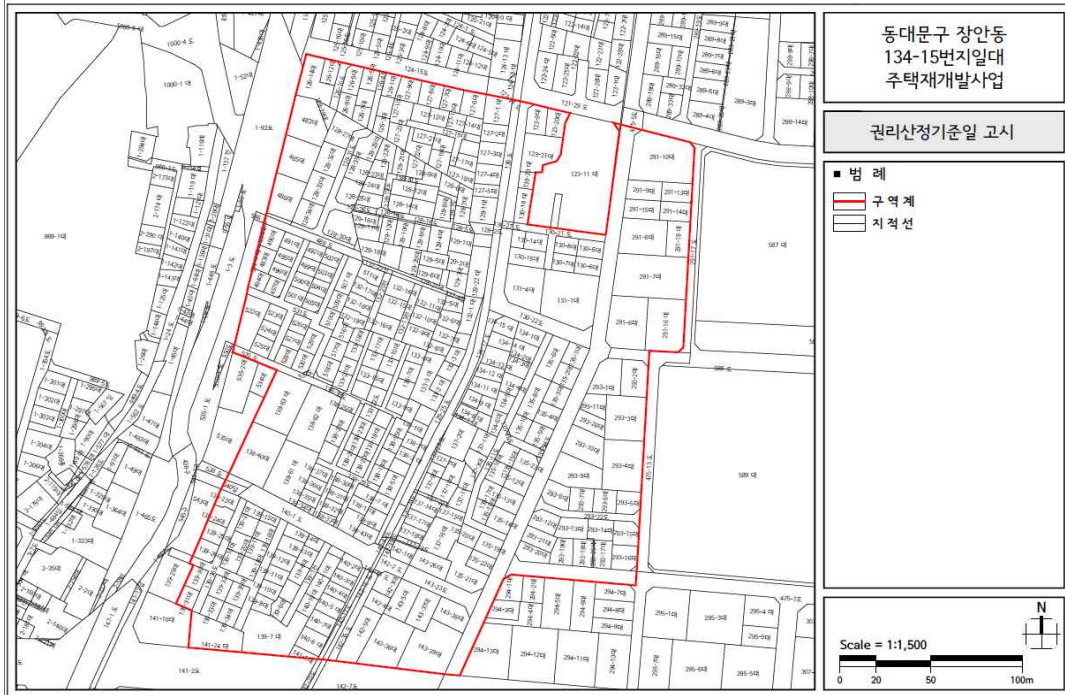
자치구	부서명	연락처	비고
동대문구	주거정비과	02-2127-4590	
강북구	재개발재건축지원단	02-901-6838	
양천구	도시계획과	02-2620-3511	
관악구	주택과	02-879-6304	
도봉구	재건축재개발과	02-2091-3412	
성북구	도시정비신속추진단	02-2241-2843	

※ 본 고시는 향후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되, 건축물의 신축,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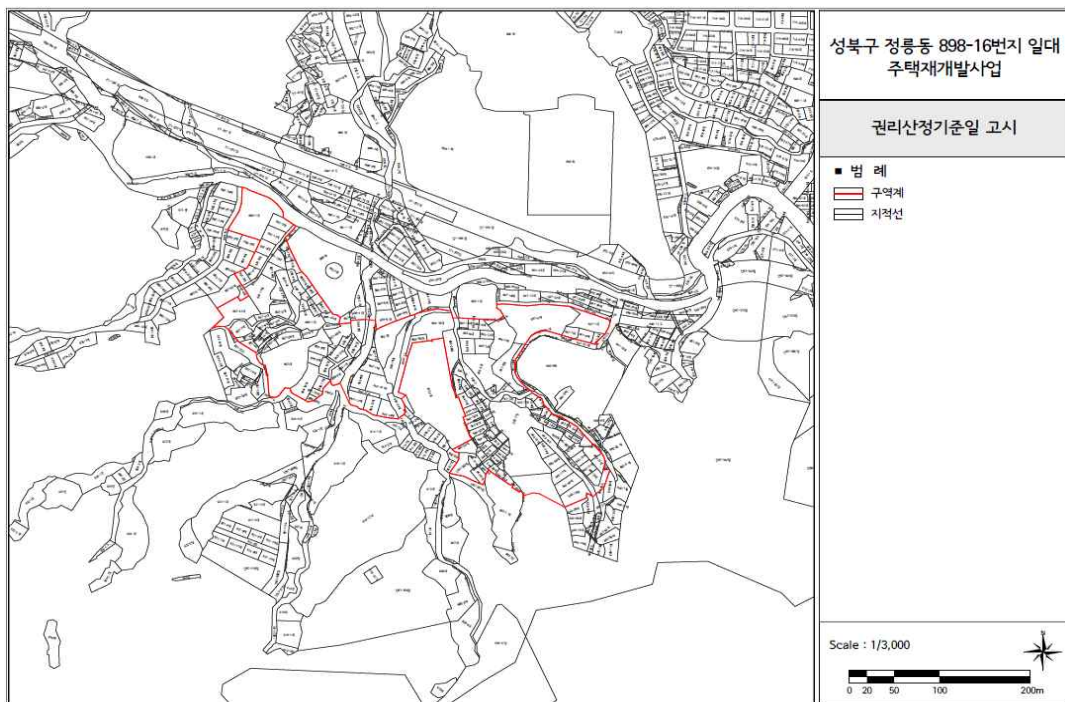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관계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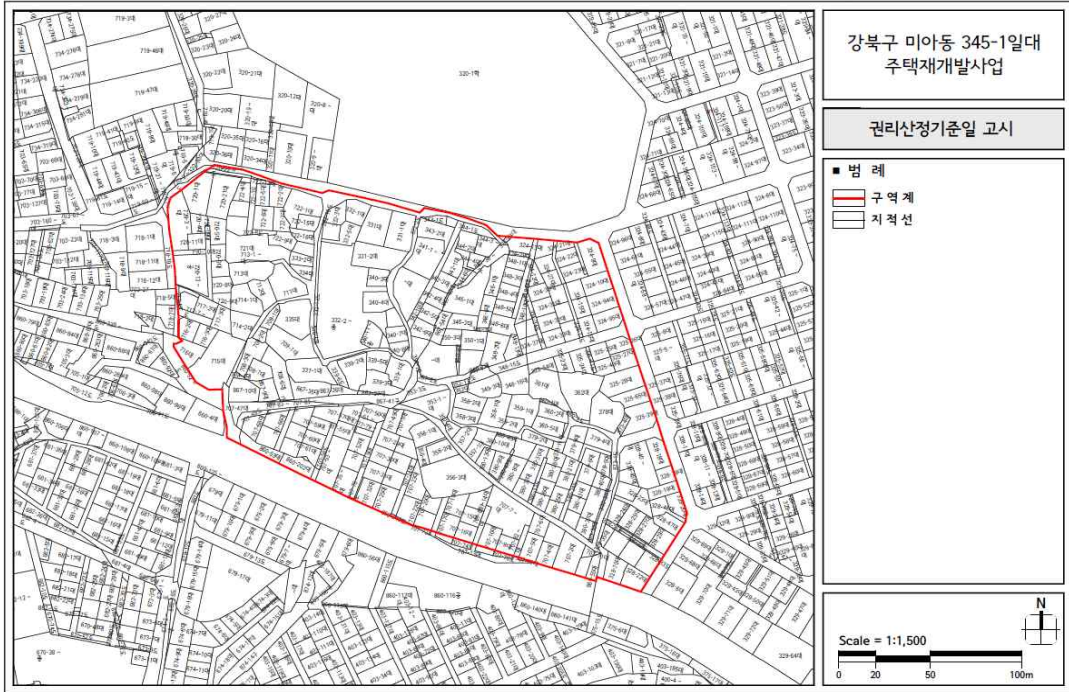
○ 동대문구 장안동134-15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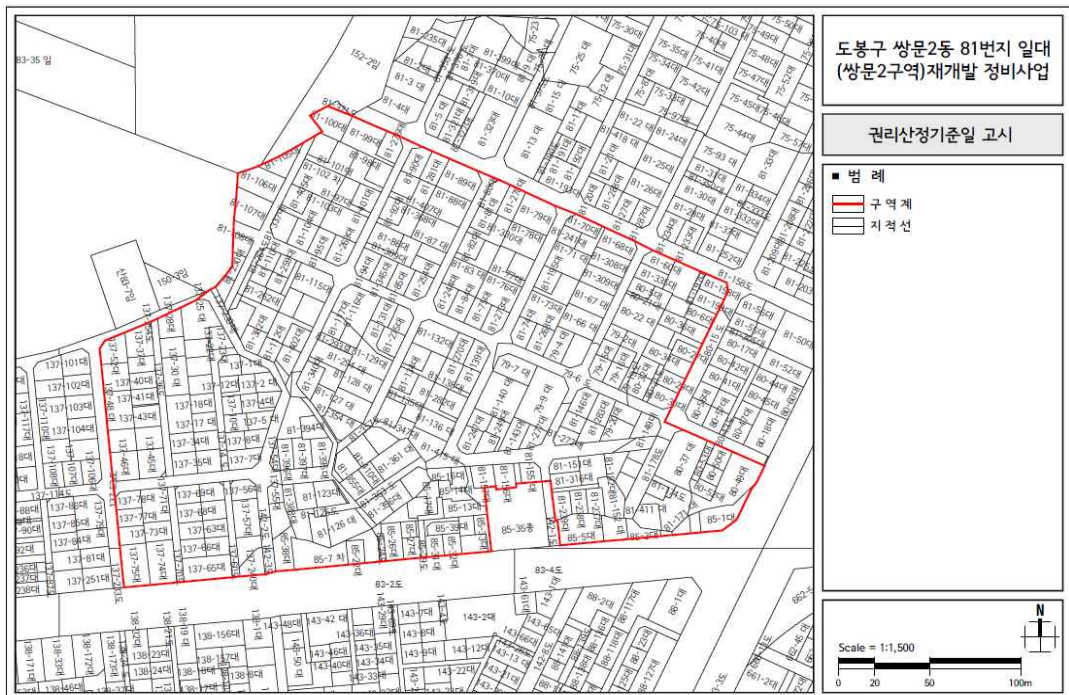
○ 성북구 정릉동 898-16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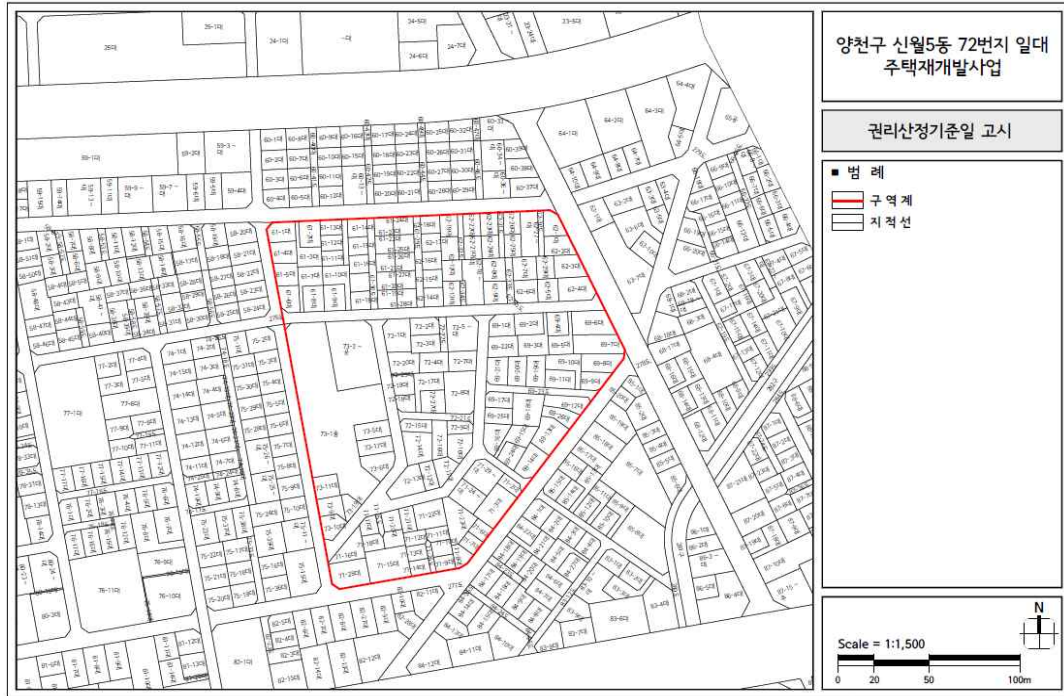
○ 강북구 미아동345-1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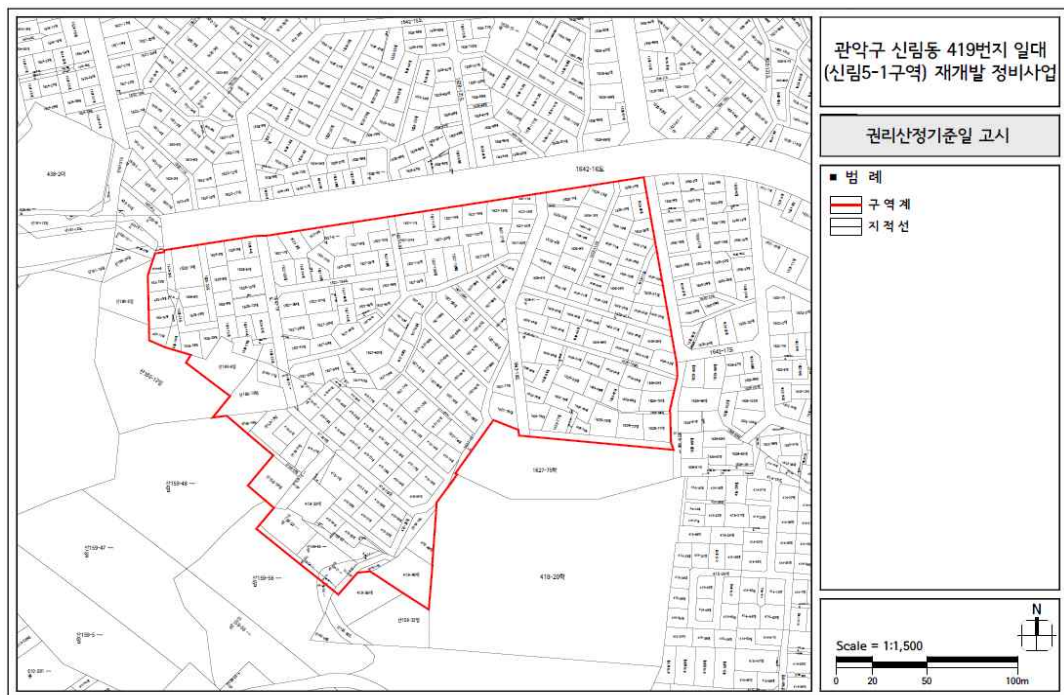
○ 도봉구 쌍문동81일대



○ 양천구 신월5동72일대



○ 관악구 신림동419일대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